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2월 27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2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2. 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1.)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소위심사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김도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1.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의 보험 가입 요청 거부 등 금지 및 보험금 지급 청구권 압류·양도 금지 등(안 제70조제6항·제7항 및 제84조제2항제23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이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생략) <u><신설></u>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2. (생략) <u><신 설></u> <u>23. · 24.</u> (생략) ③ · ④ (생략)	<u>거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u> <u>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u>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2. (현행과 같음) <u>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해제·해지한 보험회사등</u> <u>24. · 25.</u> (현행 제23호 및 제24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0조제7항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는 이 법

현행	개정안
	시행 이후 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0조제3항 및 제4항1)에 따르면 경량항공기소유자등(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²⁾),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

1)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⑤ 법 제7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항공안전법」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①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용하려는 자 그리고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 금액³⁾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과 유사하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관여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나, 이러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거나 해제·해지되는 경우, 또는 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이 압류되거나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취지 달성이 곤란해짐.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 등의 거부, 해제, 해지를 금지하고 그 청구권의 압류·양도를 금지하여 피해자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⁴⁾은 법률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또는 공제, 즉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해서 이를 규정하는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

이에 지난 2024년 8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량항공기 및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해서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규정 및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마련을 권고하였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2024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 평가결과 】

☐ [권고 내용] 법령상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규정

불충족 항목	권고 보험수	권 고 사 항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39건 (연구실 안전공제 등)	·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등	46건 (운전학원 종합보험 등)	· 사고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마련

❖ 아래 표 내용 중 제도개선 권고항목은 보험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번호*로 표시한 것임

* ① 보상한도, ②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③ 미가입자 제재 체계, ④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⑤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 '23년 불수용 보험 항목, '22년~'23년 권고 수용보험 중 미완료 항목, '24년 신규 보험 중 미흡 항목을 표기함

○ 세부 종합 평가결과

연번	기관	부서	보 험 명	등급	제도개선 권고항목
10	국토 부 (7건)	항공산업과	항공보험(경량)	나	④⑤
11		첨단항공과	항공보험(드론)	나	④⑤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주차장법」 등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유사입법례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유사하게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 거부, 해제, 해지 금지 및 보험금·공제급여 청구권 압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주차장법」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18조(보험자)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⑤ 보험사업자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이하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재난취약시설소유자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난취약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다. 국토교통부 의견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사고 등 사회재난 의무보험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 신설로, 항공보험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안을 통해 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동의함.

또한, 보험사의 계약체결 거부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고, 유사 위반행위에 관해 같은법 및 타법에서 정한 제재조치와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액(500만원 이하)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항공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청구권 압류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항공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청구권 압류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70조제7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 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안 제70조제7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안 제84조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 자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험·공제 계약의 갱신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생략) <신설>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u> ⑦ <u>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u>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u>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u> ⑦ <u>제1항부터 제4항까지</u> ----- -----
<신설>		

	<u>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u>	----- ----- ----- -----.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② -----
	-----	-----
	-----	-----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1. ~ 22. (개정안과 같음)
<신설>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해제·해지한 보험회사등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 자
23. · 24. (생략)	24. · 25. (현행 제23호 및 제24호와 같음)	24. · 25. (개정안과 같음)

③ · ④ (생략)	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항공보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0조제7항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u>제2조(보험·공제 계약의 갱신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u> <u>②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4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공제 계약의 갱신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

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생략) <u><신설></u>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 청 또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 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u><신설></u>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2. (생략) <u><신설></u>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2. (현행과 같음)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 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 는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

<u>23.</u> · <u>24.</u> (생략)	<u>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한 자</u>
③ · ④ (생략)	<u>24.</u> · <u>25.</u> (현행 제23호 및 제24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